

조교인사관리규정

4-2-4

규정번호	4-2-4
제정일자	2000.3.1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11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인사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조교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분) 학과 또는 행정부서·부속기관의 업무보조를 위해 일반조교를 둔다.(개정 2015.11.23.)

제 3 조 (임무) 일반조교는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23.)

1. 소속 학과 또는 행정부서·부속기관의 제반 학사행정업무·교육용 기자재관리 업무·학생지도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5.11.23.)
2. 소속 학과의 실험·실습교육, 교육용 기자재의 보전유지, 기타 교수의 교육활동을 보조한다.(개정 2015.11.23.)

제3조의2 <삭제(2026.7.20.)>

제 4 조 (임용자격)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해당 근무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
3.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5 조 (임용제한) 우리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임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과 또는 행정부서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우리대학 조교 임용기간이 종료된 자는 종료 다음 1년 이내에 신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8.2.5.)

제 6 조 (임용절차) ① 조교의 임용은 학과장 및 행정부서·부속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조교의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 중 근무행태와 학생지도 능력이 우수한 자는 학과장 또는 행정부서·부속기관장의 추천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부적절한 근무행태로 인한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시 재임용은 불가하다.(개정 2024.7.24.)

② <삭제(2024.10.21.)>

제 8 조 (근무시간) ① 조교의 근무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4-2-4 조교인사관리규정

② 조교는 학과장 또는 행정부서·부속기관장 책임하에 지정된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제 8조의 2 (연가) 조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1. 1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근무 개월수

2. 10개월 이상 2년 미만 : 15일

제 9 조 (복무지침) 조교의 복무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법인정관 및 우리대학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우리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한다.

4. 학내·외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5. 학생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교내 제반 시설물과 비품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복장 및 언어사용에 모범적 태도를 유지하여 올바른 근무자세를 갖춘다.

제 10 조 (보수) 조교의 보수는 우리대학 교직원보수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법인정관·인사규정 및 우리대학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2008년 3월 1일이후 임용된 조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5> <생략>

<26> 조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4-2-4 조교인사관리규정

제3조2, 제6조①, 제8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7>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의2)